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건설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5월 27일
-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해 왔으나,
- 동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 “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” 과 “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” 에 맞추어 이 조례 폐지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-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8년 12월 8일 단 1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적고
- 국토해양부의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역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
-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
-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